영등포구의회 제199회 임시회

#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討報告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3. 3.

行政委員會 專門委員 崔光黙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討報告書

#### 1. 경 과

의안 제193호로 2017년 2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# 2. 제안이유

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준공예정에 따라 사업구역 내 2개의 행정동(신길6동, 신길7동)을 하나의 행정 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

#### 3. 주요내용

가. 신길6동 2014번지 외 303필지 26,311 m²를 신길7동 으로 편입(행정동 변경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

「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」

#### 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에 따라 영등포구 관내 동주민센터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 용을 살펴보면.

신길동 2039번지 일대에 위치한 "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"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(래미안에스티움)이 신길6동과 신길7동의 관할구역에 걸쳐 구획되어 있어서 입주민 생활권과 불일치함에 따라 사업구역내 신길6동주민센터 관할구역인 2014번지 외 303필지 26,311㎡를 신길7동주민센터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여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임.

| 사업구역 내 | 변 경 전     |          | 변 경 후    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
| (행정동)  | 면적(m²)    | 비율(면적기준) | 면적( 💇)    |
| 신길6동   | 26,311    | 28%      | 0         |
| 신길7동   | 67,417.50 | 72%      | 93,728.50 |

○ 이는 2개동에 걸쳐있는 사업구역의 총 951필지, 93,728  $m^2$ 를 하나의 지번으로 통합하여 단일한 행정구역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입주민의 생활편의와 재산권 행사에 혼란이 없도록 본 조례안의 '별표' 규정 중 신길6동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임.

○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주민의 의견은 없었으며, 상위법 저촉이나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참 고 자 료

### 1 지방자치법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〉

-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(이하 "행정면"이라 한다)을 따로 둘 수 있다.
- 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·리(이하 "행정동·리"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- ⑤ 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09.4.1.]

### 2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

제9조의2(토지의 개발·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 경)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·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·면·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.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
- 2.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
- 3. 행정구역 변경도 [전문개정 2011.7.5.]